축산자조금 운영

Ⅰ. 사업 개요

□ 목 적

○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

□ 사업내용

○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,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

○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,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

○ 축산물의 소비촉진, 품질 및 생산성 향상,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

○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등

□ 지원 자격 및 요건

○ 사업대상자 : 「축산자조금법」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축산단체

○ 지원자격 및 요건

- 의무자조금 단체 : 의무자조금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

- 임의자조금 단체 : 임의자조금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

□ 지원내용 및 예산

○ 지원 내용 : 국고 보조 50%(농가거출금의 100% 범위내 매칭지원)

○ ’22년 예산 : 23,400백만원

□ 사업 신청

○ 축종별 자조금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

□ 대상자 선정

○ 축종별 자조금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

□ 담당 기관 및 연락처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연락처
농림축산식품부	축산경영과	사무관 김철기 주무관 봉영근	044-201-2336 044-201-2337
축종별자조금 관리위원회			

Ⅱ. 주요 내용

1. 사업대상자

○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자조금관리위원회

○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 단위의 단체,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○ 자조금을 조성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위원회

3. 지원대상

○ 축산물의 소비촉진, 수급안정 등 축산자조금법에 의한 자조금사업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

○ 축산업자 및 소비자, 중도매인 등과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

○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,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

○ 축산물 소비촉진, 품질 및 생산성 향상,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

○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

○ 그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 다만,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중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(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)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

5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

○ 재 원 : 축산발전기금

○ 농가거출금의 100%범위 이내에서 지원(다만,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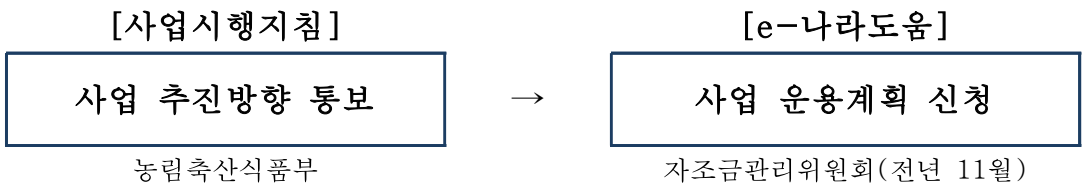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축산물(쇠고기, 우유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, 오리고기, 녹용, 꿀 등)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

○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,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대의원회(의무자조금)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(임의자조금)에서 심의·의결을 거쳐 정함

Ⅲ. 사업 신청 및 선정

1. 사업신청단계



○ 자조금사업 운용계획 제출

-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조금관리위원회(축산단체)는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(위원회 심의)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
- 자조금의 명칭,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, 수입 및 지출계획, 자조금의 운영 방법 및 절차, 자조금 조성방법 및 일정, 소비촉진 사업 등을 포함
-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

○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,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시(홈페이지 게시)

○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, 운영방법 등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에 따라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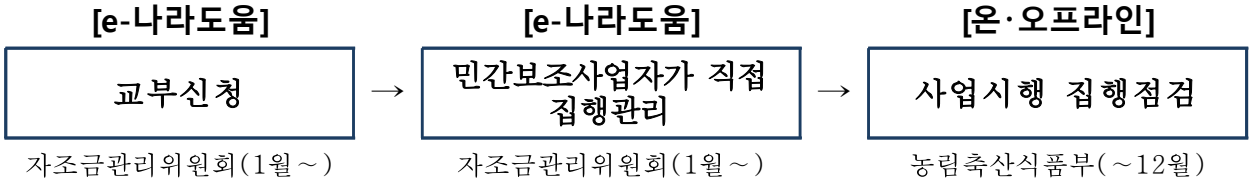
2. 사업 승인단계

○ 농림축산식품부(사업담당부서)는 자조금관리위원회(축산단체)에서 자조금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시 축산자조금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

- 사업계획 승인시 동일 축산물내에 복수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자조금 설치시 관련 축산단체의 참여 여부,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, 거출금 및 축발기금지원액 등 자조금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 후 승인

Ⅳ. 사업 시행 및 관리

1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



○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(임의자조금위원회)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

*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「기본규정」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

○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(임의자조금위원회)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

* (집행관리)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

* (계약) 1)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)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(위탁계약)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, 계약체결 등 수행

* (정산보고서 검증) 1) 농식품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)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

* (중요재산)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「보조금법」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

○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(임의자조금위원회)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전표 등)를 등록 후 집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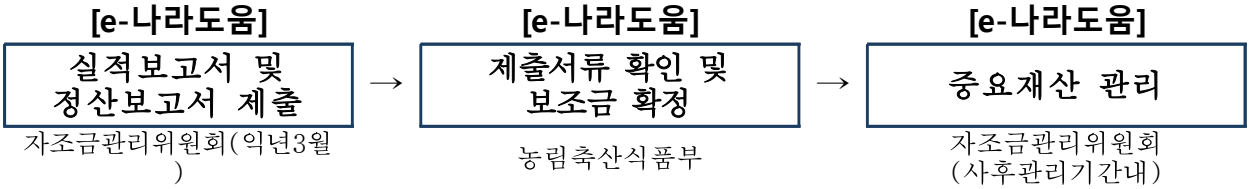
–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

○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(임의자조금위원회)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

○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'부정집행 모니터링'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(10일 이내) 사업현장 확인

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

2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

○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(임의자조금위원회)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(정산보고)를 등록

-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
-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,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
-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

○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(임의자조금위원회)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

○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

- 중요재산의 현황은「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」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
-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,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·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

○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,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○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*를 확인한 경우「보조금법」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

*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(지급)받은 경우,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,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

- 「기본규정」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, 폐·휴업, 사업포기,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「기본규정」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
-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

○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, 수행배제,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·관리

V. 평가 및 환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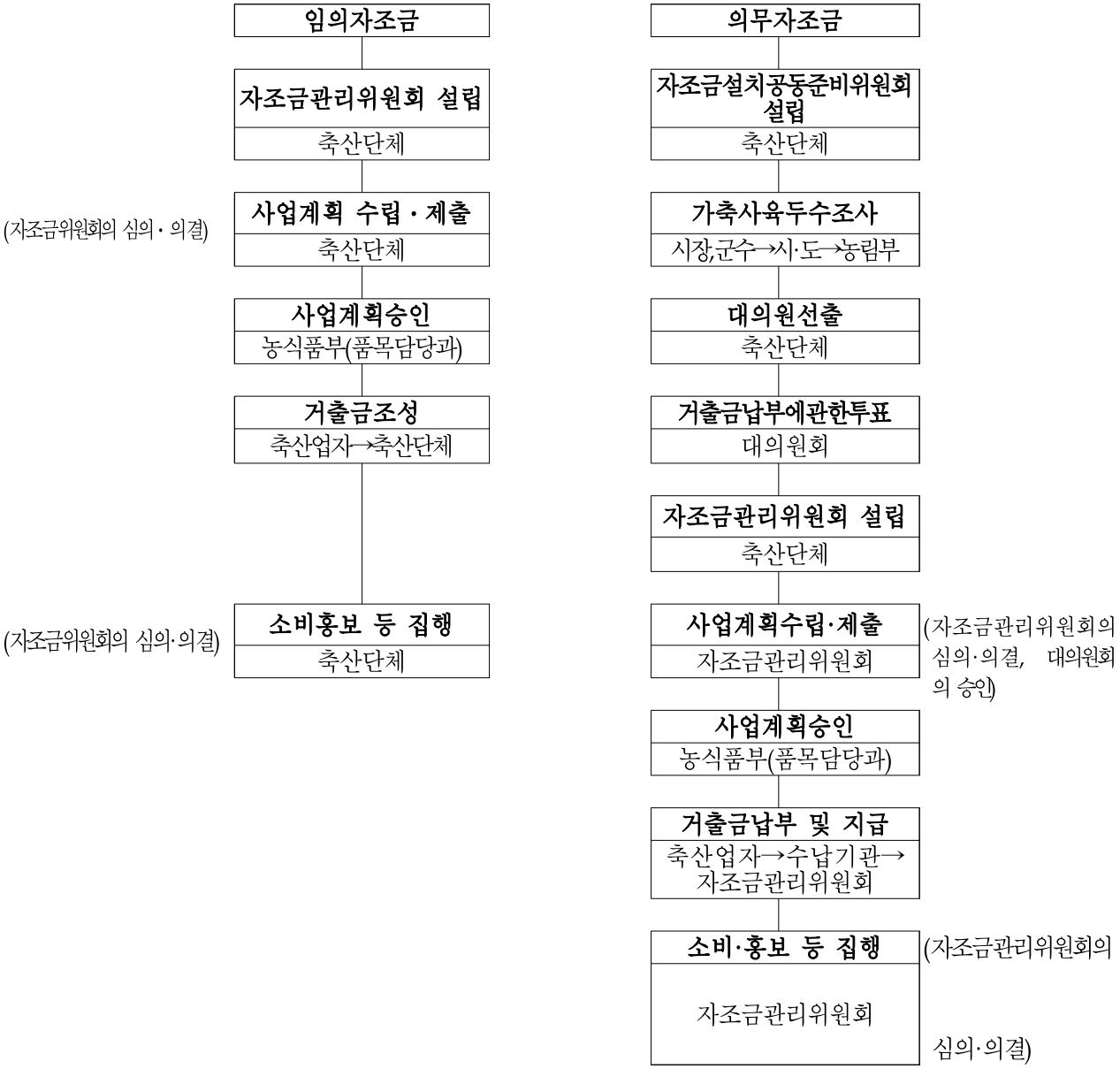
1. 평 가

○ 자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실적을 분석·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인센티브 지원을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

2. 환 류

○ 사업실적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침 및 관련규정 개선과 예산편성 반영

《사업시행체계》


임의자조금
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
축산단체
(자조금위원회의 심의・의결)
사업계획 수립・제출
축산단체
사업계획승인
농식품부(품목담당과)
거출금조성
축산업자→축산단체
(자조금위원회의 심의·의결)
소비홍보 등 집행
축산단체
의무자조금
자조금설치공동준비위원회 설립
축산단체
가축사육두수조사
시장,군수→시·도→농림부
대의원선출
축산단체
거출금납부에관한투표
대의원회
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
축산단체
사업계획수립·제출
자조금관리위원회
(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, 대의원회의 승인)
사업계획승인
농식품부(품목담당과)
거출금납부 및 지급
축산업자→수납기관→자조금관리위원회
소비·홍보 등 집행
자조금관리위원회
(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)